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디자인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료 미납 등으로 실시 중인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시 중이 아닌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디자인보호법」이 개정(법률 제13840호, 2016. 1. 27. 공포, 4. 28. 시행)됨에 따라,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 시 등록디자인이 실시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6. 2. 26. ~ 4. 6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”를 “그 취지를 적어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4조(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) ① (생략)</p> <p>②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디자인권자는 「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」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<u>그 취지를 적고</u> 다음 <u>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</u>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</p> <p>1. <u>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에 그 등록디자인이 실시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</u></p> <p>2. <u>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</u></p>	<p>제64조(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 취지를 적어</u> ----- ----- ----- . <u>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